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1조(목적)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업무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2. "실시설계"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설계'에 관한 업무** 중 영 제73조에 의한 설계를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4. "제3자"라 함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하수급인 포함)**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제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

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 : 과업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
2. 건설사업관리 : 계약 체결시 제출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이하 "손해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등"이라 한다)을 통해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 및 종류)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은 제3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 보험 또는 공제
2. 건설사업관리 보험 또는 공제

제6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금액을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도록 하

는 경우 :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2.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중 기본설계 또는 시공후 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 기본설계 또는 시공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② 발주청은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자의 인적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피해자 1명당 보상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6조의2(자기부담금)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중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자기부담금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 1로 하되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하수급인 포함)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손해와 관련하여 발주청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을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험 또는 공제가입기

간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① 발주청은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시 **건설엔지니어링비용**(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과 공제조합 등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 또는 공제약관)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가입시 금융위원회에 제출·신고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약관** 또는 이와 동일수준 이상으로 보장된 공제약관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발주청의 의무 등)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이 본 업무요령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

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엔지니어링**의 손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위험관리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보험 또는 공제가입과 관련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하여야 할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의 조사에 대한 협조 및 이들로부터 제출된 위험도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발주청에 통보할 의무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 착공 이후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해당 설계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시 연대보증인 등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등에게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가입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보험 또는 공제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

계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 ①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 따르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손해보험회사(또는 공제조합 등)와 협의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설치하는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 - 288호, 2023. 6. 2**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